

제 목 |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여부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정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 출·퇴근 중에 있는 경우에는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그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 시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死傷)한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산재기간 퇴직금 산정일수 포함여부

제가 아는 자인이 재직기간 중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때 산재보험기간동안(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도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산정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업무상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제 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중 안전시설비내역

당 현장은 지하 8층까지 암반발파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 지하 4층 암반 화약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화약발파 작업 시 고무매트 덮개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안전시설비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바, 발파작업 시 발생하는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무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 평당공사비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공사 도급계약 시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공사비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작성 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

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시공사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제 목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심사사항

착공계 제출 시 안전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별도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청장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판정합니다.

가.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청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않고 착공계 수리만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목 | 법면 보호막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터파기 공사 및 피일 향타(SIP) 작업중이며 터파기 공사중 경사2단 오픈컷(굴착깊이 6~8M) 90% 깊이 기시설(H파일 + 토류판 + 어스양카) 공법 10%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픈컷 구간중 일부구간 상부에 건설차량 운행, 하부에 향타기 작업중인 바 터파기 경사법면이 추후 토사유실 및 토사붕괴 우려가 있으나 경사법면 전 구간(150M*200M)를 법면 보호막(천막덮개)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2항 안전시설 등 경사법면 보호망)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별표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서 “경사법면 보호망(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경사법면 보호망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망(또는 덮개)를 말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사법면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수방대책용이라면 이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가변성이 많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현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